

#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 94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  
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5. 3. 24)

## 1. 심사 경과

가. 2005. 3. 3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3. 18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9호)

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(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)

### 가. 제안 이유

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으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 내용

1)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을 30% 인상함

2) 상위법령에 맞게 법률 제명 정비

○ 도시계획법 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○ 도시재개발법 ⇒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○ 토지구획정비사업법 ⇒ 도시개발법

3)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 대로 정비

### 다. 관계 법령

○ 하수도법, 하수도법 시행령

### 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관련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제명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임.
- 관련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
  -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2. 4 법률 제6655호로 「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전문개정 되었고
  - 「도시재개발법」은 2002. 12. 30 법률 제6852호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으로 전문개정 되었음.
  - 「토지구획정비사업법」은 2000. 1. 28 법률 제6242호로 「도시개발법」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제명을 개정하는 것임.
- 그리고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는 2004년도 평균요금의 30%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인상 배경을 보면
  - 우리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재원확충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년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2010년까지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.
  - 현재 우리시의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톤당 총괄원가가 747원인데 비해 하수수익은 144원으로서 603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됨.
  - 2005년도에 30%를 인상할 경우에는 톤당 평균46원이 인상되어 하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은 줄어드는 반면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따를 것으로 우려됨.
- 기타 법률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2005. 1. 1부터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2005. 1. 18 ~ 2. 12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#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최연조 위원	<p>■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않을 시는 행자부에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역 인센티브가 무엇이며</p> <p>■ 금년도에 30%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?</p>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<p>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국고 지원금이 삭감되며</p> <p>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30%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</p>
박종권 위원	<p>■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은?</p> <p>■ 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각종업체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하수도 시설을 확대하여 각종업체에도 사용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.</p>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<p>■ 사용료 징수구역은 동서, 선구, 동서금, 향촌(봉이, 이궁사제외),</p> <p>■ 별용(와룡제외), 남양(백신,노대, 광포제외) 사천읍지역임.</p> <p>하수도시설 확장은 예산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각종 사업체의 소재현황을 파악하여 조치 하겠음.</p>
진삼성 위원	<p>■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?</p> <p>■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한다고 하는데 향후 농촌지역에도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부과 근거를 현실성 있게 검토해 보기 바람.</p>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<p>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과 지하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.</p> <p>■ 향후 농촌지역에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할 시는 부과기준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부과가 되도록 하겠음.</p>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